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구비서류

센터 이용시 필요한 서류.

- ①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1부
- ②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 ③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사본 1부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사본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임소이용 의뢰서)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이용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기관과 수급자 또는 법적대리인(신원인수인)은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 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등급의 유효 기간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 ③ 계약기간의 종료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급자와 그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에 따라 재계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 재계약 (1.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3. 기타 필요한 경우)
- ④ 서비중에도 요양급여 수가변경시나 제공 횟수등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비용변경 신청서를 수급자나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다.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 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사(요양 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보호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한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 2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①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일반수급자)
-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 ③ 경감대상자와 보훈대상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 ④ 그 밖의 공단이 지정한 수급자도 경감대상자로서 7.5%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2019년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8년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2019년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 방문요양(방문시간당) 이용료 (2017.3.1부터 210분, 240분 요양급여시간은 1-2등급만 이용가능)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6%)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6%)
30분	14,120	2,118	847	150분	41,730	6,260	2,504
60분	21,690	3,254	1,301	180분	46,130	6,920	2,768
90분	29,080	4,362	1,745	210분	50,190	7,529	3,011
120분	36,720	5,508	2,203	240분	53,940	8,091	3,236

◆ 방문목욕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6%)	기초생활수급권자
방문차량 미이용시	40,840	6,126	2,450	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로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통보 의무.
- ④ 장기 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 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일부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일 부 부담금이 50% 경감된다.
- ⑦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⑧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 ⑨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경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⑩ 장기요양인정에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② 수급자 및 그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 불안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장수재가복지센터